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95
----------	-----

제출연월일 : 2007. 8. 2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부서의 개정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나. 행정자치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라 수수료를 연도별로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지위승계 등 2개 항목을 삭제하고,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등 제작업 또는 배급업신고 등 10개 항목을 신설함(안 별표 2).
- 나. 수수료 중 원가미달 수수료 20개 항목을 현실화 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관련부서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7. 7. 27. ~ 8. 1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제증명등”을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수입증지”를 “대전광역시수입증지”로 한다.

별표 2제1호 아·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아. 화재증명		1통	1,600원	
자. 그 밖의 제증명(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증명으로써 수수료 징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1통	1,900원	

별표 2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인·허가·등록 등			
가.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허가)신청			
(1) 신규	1건	28,000원	
(2) 계속	1건	2,000원	
나.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500원	
다. 도축검사			
(1) 소, 말	1두	1,200원	
(2) 돼지, 양	1두	700원	
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록 신청	1건	1,000원	
마. 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또는 변경	1건	20,000원	
바.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800원	
사. 중도매업 허가 및 변경신고	1건	2,000원	
아. 매매참가인 등록 및 변경신고	1건	2,000원	
자. 하천점용(물량증가)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차. 유선,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1건	1,000원	
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1척	34,0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1척	34,0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1척	34,0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및 기관을 장치한 배	1척	34,000원	
타.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	1건	600원	
파. 공영주택의 양도·양수등 승인신청	1건	850원	
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6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거. 토지사용(체비지) 승락서	1건	500원	
너.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600원	
더.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러.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400원	
머.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400원	
버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600원	
서.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200원	
어.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	1건	1,100원	
저. 건설기계 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	1건	1,100원	
쳐.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56,500원	
커. 병원개설 허가	1건	50,000원	
터.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	1건	30,000원	
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1건	5,200원	
허.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1건	5,300원	
고. 각본등 심사신청	1건	1,800원	
노.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700원	
도.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800원	
로.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6,200원	
모.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1건	4,000원	
보. 승강기보수업 등록	1건	50,000원	
소.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1건	22,200원	
오.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	
조.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1건	30,000원	
초. 전기공사업의 승계(양도,양수,합병)신고	1건	30,000원	
코. 전기공사업의 상속신고 (다만, 조목 내지 코목은 지정공사업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1건	5,000원	
토.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등록수첩 재교부			
(1) 승계(양도,양수,합병)신고 재교부	1건	5,000원	
(2) 상속에 따른 재교부	1건	5,000원	
(3) 분실, 파손, 기재란부족 등 재교부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포. 종합설계업			
(1)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원	
호. 전문설계업 1종			
(1) 등록신청	1건	30,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원	
구. 전문설계업 2종			
(1) 등록신청	1건	20,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15,000원	
누. 종합감리업			
(1)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원	
두. 전문감리업			
(1) 등록신청	1건	30,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원	
루. 설계·감리업의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무. 석유판매업 등록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1건	59,000원	
(2) 부생연료유 판매점	1건	59,000원	
부.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1) 대리점 등록	1건	35,000원	
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1대	7,3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1대	15,300원	
(3)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 허가신청	1대	7,300원	
(4) 임대 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대	7,900원	
우.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 등			
(1)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주.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1건	30,000원	
(3) 등록신청	1건	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추. 자동차경주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1건	20,000원	
(3) 등록신청	1건	3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 ----- -----</p> <p>제6조(징수방법) ①-----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사. (생략)				가.~사. (현행과 같음)			
아. 화재증명	1통	1,500원		아. 화재증명	1통	1,600원	
자. 그 밖의 제증명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증명으로써 수수료 장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것)	〃	1,800원		자. 그 밖의 제증명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증명으로써 수수료 장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것)	1통	1,900원	
2 인·허가·등록등				2 인·허가·등록등			
가.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허가)신청				가.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허가)신청			
(1) 신규	1건	27,300원		(1) 신규	1건	28,000원	
(2) 계속	〃	2,000원		(2) 계속	1건	2,000원	
나. 입목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원		나. 입목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원	
다. 도축검사				다. 도축검사			
(1) 소, 말	1두	1,200원		(1) 소, 말	1두	1,200원	
(2) 돼지, 양	〃	700원		(2) 돼지, 양	1두	700원	
라.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 등록 신청	1건	1,000원		라.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 등록 신청	1건	1,000원	
마. 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또는 변경	1건	20,000원		마. 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또는 변경	1건	20,000원	
바.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	1,800원		바.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800원	
사. 중도매업 허가 및 변경신고	〃	2,000원		사. 중도매업 허가 및 변경신고	1건	2,000원	
아. 매매참가인 등록 및 변경신고	1건	2,000원		아. 매매참가인 등록 및 변경신고	1건	2,000원	
자. 하천점용(물량증가) 변경허가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		자. 하천점용(물량증가) 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	

현행				개정안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차. 유선,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	1,000원		차. 유선,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1건	1,000원	
카.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신청				카.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1척	33,000원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1척	34,0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33,0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1척	34,0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33,0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1척	34,0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33,0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및 기관을 장치한 배	1척	34,000원	
타.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	1건	600원		타.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	1건	600원	
파.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	850원		파.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1건	850원	
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	600원		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600원	
거.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500원		거.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너.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	〃	600원		너.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	1건	600원	
더.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500원		더.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러.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400원		러.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400원	
며.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	400원		며.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400원	
버.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서.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500원		버.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서.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600원	
어.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 및 이전등록신청	1건	1,100원		어.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 및 이전등록신청	1건	1,100원	

현행				개정안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저. 건설기계 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	〃	1,100원		저. 건설기계 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	1건	1,100원	
처. 종합병원 개설허가	〃	55,000원		처.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56,500원	
커. 병원개설 허가	〃	50,000원		커. 병원개설 허가	1건	50,000원	
티. 의료기관개설 허가 사항 변경	〃	30,000원		티. 의료기관개설 허가 사항 변경	1건	30,000원	
피.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	5,100원		피.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1건	5,200원	
허.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5,200원		허.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1건	5,300원	
고. 각본등 심사신청	〃	1,800원		고. 각본등 심사신청	1건	1,800원	
노.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700원		노.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700원	
도. 종합게임장 지정신청, 지위승계	〃	20,000원		도.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800원	
로. 종합게임장 지정변경 (신고)	〃	5,000원		로.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6,200원	
모. 비료생산업 등록	〃	42,500원		모.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1건	4,000원	
보. 비료수입업 신고	〃	25,300원		보. 승강기보수업 등록	1건	50,000원	
소.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	4,000원		소.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1건	22,200원	
오. 승강기보수업 등록	〃	50,000원		오.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	
조.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	21,500원		조. 전기공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신고	1건	30,000원	
초. 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		초. 전기공사업의 승계 (양도,양수,합병)신고	1건	30,000원	
코.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1건	30,000원		코. 전기공사업의 상속신고 (다만 조목 내지 코목은 지정 공사업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1건	5,000원	
토. 공사업의 승계(양도, 양수,합병)신고	1건	30,000원		토.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등록수첩 재교부			
포. 공사업의 상속신고	1건	5,000원		(1) 승계(양도,양수,합병) 신고 재교부	1건	5,000원	
호. 공사업의 등록증, 등록수첩 재교부				(2) 상속에 따른 재교부	1건	5,000원	
(1) 승계(양도,양수,합병) 신고 재교부	1건	5,000원		(3) 분실, 파손, 기재란 부족 등 재교부	1건	5,000원	
(2) 상속에 따른 재교부	1건	5,000원					
(3) 분실, 파손, 기재란 부족 등 재교부	1건	5,000원					

현행				개정안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 종합설계업				포. 종합설계업			
(1) 등록신청	1건	50,000원		(1)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45,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45,000원	
누. 전문설계업 1종				호. 전문설계업 1종			
(1) 등록신청	1건	30,000원		(1) 등록신청	1건	30,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두. 전문설계업 2종				구. 전문설계업 2종			
(1) 등록신청	1건	20,000원		(1) 등록신청	1건	20,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15,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15,000원	
루. 종합감리업				누. 종합감리업			
(1) 등록신청	1건	50,000원		(1)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45,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45,000원	
무. 전문감리업				두. 전문감리업			
(1) 등록신청	1건	30,000원		(1) 등록신청	1건	30,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부. 설계·감리업의 변경 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다만 코목 내지 포목은 자정 공사업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1건	5,000원		루. 설계·감리업의 변경 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수. 석유판매업 등록				무. 석유판매업 등록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1건	57,000원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1건	59,000원	
(2) 부생연료유 판매점	〃	57,000원		(2) 부생연료유 판매점	1건	59,000원	
우.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부.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1) 대리점 등록	1건	35,000원		(1) 대리점 등록	1건	35,000원	
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신규·변경)신고	1대	7,100원		(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신규·변경)신고	1대	7,3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신청	〃	14,8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신청	1대	15,300원	
(3)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 허가신청	〃	7,100원		(3)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 허가신청	1대	7,300원	

현행				개정안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4) 임대 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7,700원		(4) 임대 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우.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등 (1)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2)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주.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3) 등록신청 (4) 변경등록 신청 추. 자동차경주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3) 등록신청 (4) 변경등록 신청	1건	7,900원	

관 계 법 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07. 1. 19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의 승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7. 1. 19 개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제정)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제정)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0조(수수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전면개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 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 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수수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제·신설되는 수수료 항목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2. 인·허가·등록 등			
○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지위승계	1건	20,000원	삭제
○ 종합게임장 지정변경(신고)	〃	5,000원	〃
○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 등			
(1)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신설
(2)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	10,000원	〃
○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원	신설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	30,000원	〃
(3) 등록신청	〃	50,000원	〃
(4) 변경등록 신청	〃	20,000원	〃
○ 자동차경주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원	신설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	20,000원	〃
(3) 등록신청	〃	30,000원	〃
(4) 변경등록 신청	〃	10,000원	〃

수수료 현실화 추진 항목

구 분	기 준	개 정 전	개 정 후
1. 증명			
○ 화재증명	1통	1,500원	1,600원
○ 그 밖의 제증명(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증명으로써 수수료 징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1,800원	1,900원
2. 인·허가·등록 등			
○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허가)신청			
(1) 신규	1건	27,300원	28,000원
○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1척	33,000원	34,0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33,000원	34,0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33,000원	34,0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33,000원	34,000원
○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500원	1,600원
○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55,000원	56,500원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	5,100원	5,200원

구 분	기 준	개 정 전	개 정 후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1건	5,200원	5,300원
○ 비료생산업 등록		42,500원	43,800원
○ 비료수입업 신고		25,300원	26,200원
○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	21,500원	22,200원
○ 석유판매업 등록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1건	57,000원	59,000원
(2) 부생연료유 판매점	"	57,000원	59,000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1대	7,100원	7,3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	14,800원	15,300원
(3)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 허가신청	"	7,100원	7,300원
(4) 임대 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	7,700원	7,900원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년 8월 27일
3. 상 정 일 자 :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9. 10)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1. 제안이유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부서의 개정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나. 행정자치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라 수수료를 연도별로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지위승계 등 2개 항목을 삭제하고, 음반·음악 영상물·비디오물 등 제작업 또는 배급업신고 등 10개 항목을 신설함 (안 별표 2).
- 나. 수수료 중 원가미달 수수료 20개 항목을 현실화 함 (안 별표 2).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희배)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키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업무가 민간단체 또는 자치구로 이관된 종합계 입장 지정신청·지위승계 등 2개 항목을 삭제하고,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 등 제작업 관련 신고 2개 항목 등 총 10개 항목을 신설함.

○ 본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실물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사용료 요율을 금년 목표인 92% 대로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